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18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윤준병 · 이학영 · 박희승
이언주 · 박용갑 · 이용우
이춘석 · 최혁진 · 송옥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 3항 및 제4항 신설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할당관세)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71조(할당관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 용받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 1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u>
<u><신 설></u>	<u>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 건을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 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을 적 용하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 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 ④</u> (생 략)	<u>⑤ · 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41조(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제241조(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세관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u> ⑤ · ⑥ (생략)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u>-----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